보수규정

제 정 2006. 10. 30 정(1) 2008. 9. 4 개 개 정(2) 2011. 2. 7 2014. 12. 31 개 정(3) 개 정(4) 2015. 6. 23 개 2015. 10. 1 정(5) 2018. 12. 13 개 정(6) 2019. 6. 26 개 정(7) 개 정(8) 2019. 10. 23 2020. 6. 24 개 정(9) 개 정(10) 2024. 1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해외현지직원과 별정직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해외주재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재원 관리세칙을 우선 적용한다.
 - ③해외현지직원 및 별정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보수"라 함은 기준급, 제수당, 업적급 및 초과수익 인센티브를 말한다.
- 2. "기준급"이라 함은 기본급과 직무급을 말한다.
- 3. "기본급"은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 4. "직무급"은 직원이 맡은 직무의 내용,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 5. "제수당"이라 함은 시간외근무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및 자녀수당을 말한다.

- 6. "월기준급"은 기준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7. "업적급"이라 함은 개인의 업무성과결과와 공사의 성과결과를 반영하여 직무 및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업적급과 장기 업적급으로 구분하다.
- 8. "초과수익 인센티브"란 투자운용부문 직원 중 초과성과 창출에 기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 급여를 말한다.
- 9. "통상임금"은 기준급, 직책수당을 말한다.
- 10. "평균임금"은 기준급, 제수당 및 업적급을 말한다.
- 11. "해외현지직원"이라 함은 현지에서 채용되어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2장 보수

- 제4조(기준급) ①기준급 중 기본급은 매년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 ②기준급 책정시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일반직원이 만55세를 초과하는 시점의 익년부터 승진을 제외하고는 기준급을 조정하지 않는다.
 - ④일반직원이 만58세에 도달한 달이 속한 반기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만 60세에 도달한 달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기준급을 하향 조정하되, 상세사항은 보수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직무급은 직무별, 직급별로 차등하여 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업적급) ①업적급은 공사가 정한 개인별 성과평가기준 및 공사 성과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②업적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사대우 직원이 계약기간의 종료, 임원으로의 임명 또는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와 직원이 정년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업적급은 퇴직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업적평가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급한다.
 - ③업적급 외에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 성과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장기 업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초과수익 인센티브) ①초과수익 인센티브는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초과수익 인센티브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투자운용부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장 지급기준

제7조(기준급 산정기간) ①기준급의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②직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보수지급일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일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수의 제한) 대기발령자 등에 대한 보수는 사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파견자등에 대한 보수) 파견자, 휴직자, 징계자 및 휴가자 등에 대한 보수는 사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퇴직금

제10조(퇴직금) 직원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장 해외현지직원의 보수

제11조(해외현지직원의 보수 구성) 해외현지직원의 보수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기타

제12조(법정수당 등) ①연차수당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 세칙에

따라 지급한다.

제7장 보칙

제13조(하부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기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 부터 소급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일 현재 내부 품의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